

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「소년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.

「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「소년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,

-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· 집단화되고 있으며, 그중 상당수가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13~14세 미만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행 「소년법」은 14세 미만 아동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어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며, 일부 청소년은 이를 악용해 “처벌받지 않는다”는 인식 하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, 청소년 교화·재활 및 피해자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「소년법」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.

□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수 있도록 「소년법」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,
- 청소년의 교화·재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, 지역사회·학교·가정이 연계되는 예방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